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檢討報告書

【정선희 의원 발의】



2020. 8. 31.

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 252호로 2020년 8월 21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프리랜서는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'근로자로서 권리'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,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(안 제4조)
- 다.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라.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」 등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결과(2020.8.21. ~ 8.26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(안)의 제안 이유는

- 현대사회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 형태가 파생되는 반면, 법적 보호는 여전히 「근로기준법」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.
- 프리랜서는 특정한 소속 없이 사용자의 관리·감독 및 지시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특성으로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○ 조례(안)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프리랜서를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.
- 안 제6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상담 지원, 노동관계법령 교육, 복지 및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등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,

- 안 제9조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화수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조직 구조의 유연화, 고용형태의 다변화의 영향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정된 근로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- 프리랜서는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명시된 근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금체불과 불법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. 그러나 프리랜서역시 노동자라는 인식 하에서 현행 법 체계 속에서 보호의필요성이 있는 바, 본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상담, 노동관계법령의 교육,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등의 지원 사업은 바람직함.
-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실직 등을 할 경우,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지원금 지원 대책도 중요함.
- 검토 결과, 현재 프리랜서는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익 보장이 미흡한 상황인 바,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대한민국헌법

-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 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
 -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 -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 -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 - ⑥ 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 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

2 근로기준법

- 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2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 - 3. "근로"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.
 - 4. "근로계약"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.

5. "임금"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.

3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,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,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특수형태근로종사자"라 한다)의 노무(勞務)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 - 1.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
 - 2.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 -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 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.
 -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사 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 용한다.
-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·소멸 및 변경,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, 보험료의 산정·신고· 납부,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
-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①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렁으로 정한다.

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- 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 법 제12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.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「보험업법」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
 - 나. 삭제 <2011. 1. 24.>
 - 다. 삭제 <2015. 4. 14.>
 - 라. 「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

- 2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
- 3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
- 4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
- 5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(소화물을 집화·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)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
- 6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
- 7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
- 8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
- 9.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(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)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
- 10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. 다만,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11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
- 12.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 제품을 배송,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
- 13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 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

- 나.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
-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
- 라.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로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